

1. 사회보장급여 신청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각각)

▶ 신청 취지

- 광진구청장의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 신청 부적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민원처리 시 민원 응대 부적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 ① 사적이전소득 반영을 위한 자료(본인 은행계좌 거래내역 1년) 요청이 과도함
- ② 과거 재산(주택) 조회와 부채(신용회복위원회) 누락으로 조사 과정이 부적법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서에 따르면, '정기지원(최근 1년중 6회이상 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OOO OO시 OO구(2024년 2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에서 조사된 사적이전소득의 조정을 위해 금융재산 자료(OO은행 입출금 내역)이 필요함을 알리고, 해당 서류 제출을 4차 안내(2024.11.4. 유선, 11.7, 11.12. 대면, 11.16 등기)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서 발체(p.121)

(4) 소득반영 방법

(가) 정기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받는 경우를 말함**

(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의 비정기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 (재산 조회) 신청인이 민원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본인이 자필서명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포함(관련공문:사회보장급여 확인 및 신청조사 요청, OO동-13685, 24.9.19.)되어 있어 조사과정에서 과거 재산 조회 적법함

- **(과거 증여재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증여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됨. 하지만 신청인의 증여재산(000 0000 000-0 00, 2017.10.22.)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2021. 7. 1.)전 규정에 따라 조사일 기준 과거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증여재산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처분한 지 5년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공제되었음.

- **(기타증여재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제1항제1호다목을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차액만큼 타인에게 처분하였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처분한 재산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재산 조사 시 반영된 기타증여재산 보증금 차액(0천만원)은 신청인이 우리구 전입 시 변동된 부동산 임차보증금(00구 보증금 0천만원→ 광진구 보증금 0천만원)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자연감소분(2024.9~11월, 0,000,000원) 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신청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으로 해당 금액을 반영해도 소득인정액의 변동은 없음.

- **(부채 반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제1항제5호에 따르면,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권자 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 재산과 부채관련 자료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 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도 포함되나, 신청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위 부채를 적용해도 해당 환산액에 변동이 없음.

○ (신청인 사회보장급여 조사 세부 결과)

○ 사회보장급여(생계) : **부적합**(24. 12. 2. 결정)

- **소득인정액**: 000,000원(1인가구 생계급여기준액 713,102원)

- 소득평가액: 000,000원 사적이전소득 415,734원 [사적이전소득 000,000원 중 기준중위소득 15%(000,000원) 초과 분] + 기초연금 0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주거용, 일반, 금융재산, 부채 등 포함. 0,000원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참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서울 0,000만원)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 신청 결과 부적합 결정이 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광진구청장이 사적이전소득 반영을 위하여 요구한 1년치의 본인 은행계좌(OO) 거래내역 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광진구청장은 법적근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지원 대상자 부적합 결정을 하였음
- 아울러 신청인의 과거 증여재산(000 00)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해 해당 재산금액 모두 공제처리 되었으며, 기타 증여재산(임차보증금)은 자연감소분 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신청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으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관련법 상 신청인의 개인 재산 및 부채 자료는 신청인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으로, 부채를 적용하여도 소득환산액에 변동이 없음

▶ 판단 및 결론

- 광진구청장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청의 자료요구행위로 신청인에게 1년간의 OO예금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등 여하 법률적, 행정적 원칙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행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 신청인의 조사 과정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광진구청장은 신청인에게 4차례 자료 제출 요구(2024.11.4. 유선, 11.7, 11.12. 대면, 11.16 등기) 과정을 통하여 그간의 처리 경과 안내 등 이해 설득을 위해 노력한 점과 관련 근거법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조사의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유로 광진구청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행위를 자의적으로 행하였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하였다는 여하한 행위도 찾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관련 부실 공사 등 피해 사실 조사 (기각)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여 주차장 바닥공사를 지원 받았으나, 공사 이후 지속적인 균열 및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수공사 시행 및 행정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광진구는 신청인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개선 공사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 확인 및 부분 보수, 재시공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치를 시행하였음

※ 부설주차장 관련 민원 처리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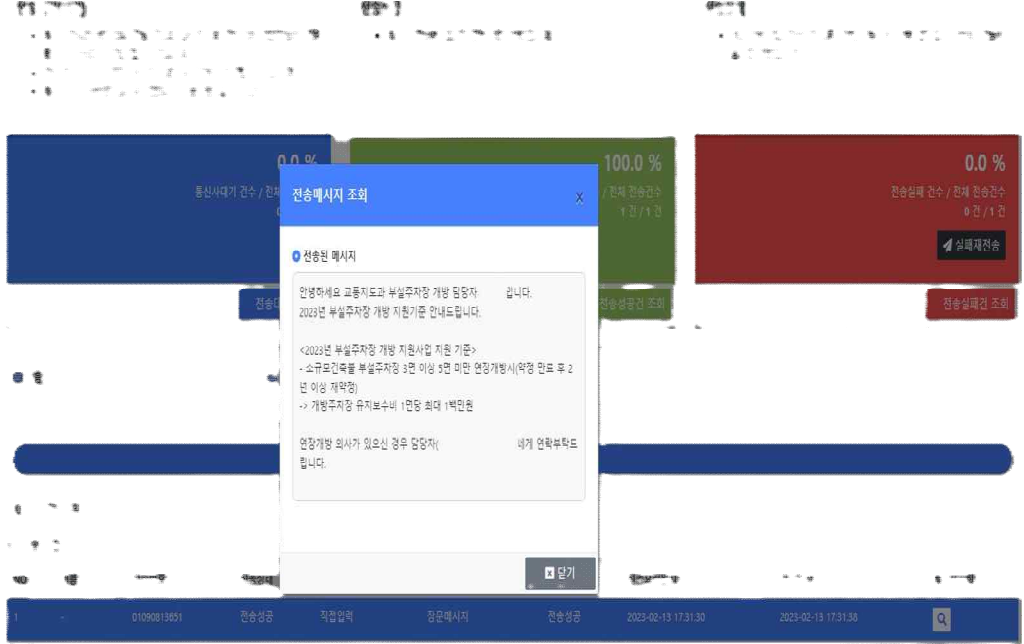
구분	일 시	내 용
	2020. 3월	건축물 부설주차장 8면 중 5면, 2년 개방 협약(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설개선 지원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한 바닥공사를 진행(소요예산 0,000천원)
유선	2020년 수시	공사 후 바닥면 들뜸과 갈라짐 현상에 대해 보수 요청 → 요청사항에 대해 업체 측 부분 보수 진행
유선	2021. 2월	바닥면 들뜸과 갈라짐 현상에 대해 보수공사 요청 → 업체 측 요청에 따라 해빙기 이후 보수 진행하기로 함
유선 방문	2021. 4. 8.	민원인 전화 및 내방하여 바닥 보수 요청 → 담당직원 현장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시공업체에 보수 요청할 것임을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회신
유선	2021. 4. 12	민원인이 요청한 바닥 보수공사일정을 정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유선연락 → 민원인은 관련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서면민원에 대해 먼저 답변할 것을 요청
1차 서면	2021. 4. 14.	개방 협약 기간 변경 요구 - 민원인은 주차공간 5면을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개방하였으나,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인센티브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까지인 협약 기간을 2021년 6월 또는 9월로 변경 요구
1차 서면 추가 + 유선	2021. 4. 20.	1차 서면민원(제198274호)에 따른 민원인 추가 협의(본인과 직접 통화) -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한 대책, 부정주차 등의 신고에 대한 성의 있는 처리에 대한 광진구의 방안, 현재 주차장의 하자보수공사에 있어 근본적 시공 방안 제시 등에 대한 광진구의 답변 요청(민원답변 선행) - 위 사항에 대한 광진구의 답변에 따라 민원인은 개방협약 지속 여부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임. 민원인은 개방협약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구의

구분	일 시	내 용
		답변을 검토하고 협약 철회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임을 밝힘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이후 하자보수를 위한 방문협의 및 공사 시행에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임
1차 서면 답변		○ 본 민원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구 교통지도과 담당팀장 통화 시 우리구의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개방협약 지속 여부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 향후 우리구에서 당해 개방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주차장 이용 주의사항과 무질서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차 안내하고 이를 어길 시, 배정 취소 등 조치하여 귀하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2020. 3월 진행한 주차장 바닥공사와 관련하여 들뜸, 갈라짐 등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2021. 4. 20. 유선 통화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귀하와 별도 안내를 통하여 방문일정을 정하고 업체와 현장방문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자보수 범위 등 협의 후 협약기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차 서면	21. 4. 26.	○ 부설주차장(00동 00-00) 개방 협약 기간 9월말로 변경 요구
2차 서면 답변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2021. 4. 26. 우리 구에 서면으로 제출하신‘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서 관련’서면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주차장 개방에 따라 2020. 3월 진행한 주차장 바닥공사 하자보수와 관련 2021. 2. 8. 현장방문, 4. 20. 전화통화, 4. 20. 서면민원 답변 및 4. 28. 이메일 회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방문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시면 업체와 현장 방문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자보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협약종료와 관련하여 만일 하자보수 범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수공사를 진행하지 못 할 경우 협의결과 및 귀하의 최종의견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 일정(2021. 7월 재배정)에 맞춰 2021. 6월 말일 자로 협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담당자 000 ☎450-000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차 서면	21. 5. 13.	□ 부설주차장(00동 000-00) 개방 협약 기간 2021. 6월 말에 종료 후 주차장 바닥 전체 하자보수공사 요구 ○ 민원내용 - 민원인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협약체결하고 성실하게 이용자관리를 하여 왔으나 우리 구에서 민원인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로 인한 주차장 전체적 시설 문제 해결)와 다른 하자보수 범위를 제시하고 있고 민원인의 요구를 묵살하였음 - 담당자들은 현장에 방문하여 하자내용을 확인하고 보수를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미루고 방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설하자로 인한 시비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 구의 하자보수 제공 사항을 신뢰할 수 없음 - 광진구부설주차장 개방협약서 제7조에 따른 인센티브지원과 관련 개방면수별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하며, 기 민원제기된 사항과 관련 6월 중 협약 종료 후 7월부터라도 부설주차장 바닥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조치 바람
3차 서면 답변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2021. 5. 13. 우리 구에 서면으로 제출하신‘광진구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서 효력 종료(해지) 요청 등’서면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분	일 시	내 용
		○ 먼저 2020. 3월 귀하께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심에 따라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귀하의 사정 등으로 세부적 사항에 대한 현장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족한 점을 느끼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협약종료와 관련하여 귀하의 최종의견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 일정(2021. 7월 재배정)에 맞춰 2021. 6월 말일 자로 협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우리 구에서 2020. 3월 진행한 바닥공사는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드린 것으로 2021. 6월 말 협약 종료일 이전에는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협약 종료(2021. 6. 30.) 이후에 하자보수 공사는 진행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귀 주차장의 개방으로 인한 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범위에 대하여 공개를 원하신 것과 관련, 우리 구에서 시행한 공사는 바닥면의 엠크릴 포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및 카스토퍼 설치공사로서 바닥 포장, 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 공사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시행 가능하며, 협약 종료 이전에 방문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시면 업체와 현장 방문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자보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담당자 000 ☎450-000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1. 6. 30.	협약종료
	21. 7월	협약 종료됐고 하자보수 보증기간(1년) 지났지만 000000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재도색 작업. 민원인에게 더 이상 보수작업 불가하다고 구두상으로 약속
유선	21년 말 ~ 22년 초	21. 7월 보수공사도 하자라고 재보수해달라고 민원 제기
방문	22. 12. 12.	○ 민원내용 - 민원인은 2022년 초까지 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 참여하여 인센티브 공사로 주차장면을 MMA 재질의 포장재로 시공 받았음 - 주차장 바깥면까지 MMA 포장을 하였는데 상당 부분에서 몇 달도 못되어 포장재의 균열과 파손이 진행되어 포장재가 부스러져 결국 부서진 포장조각들로 인해 산업폐기물만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파손된 부위에 대한 재포장을 한 후에도 불과 3개월만에 재차 균열, 들뜸 및 파손이 반복되었는 바, - 처음부터 민원인의 주택 주차장에 적합하지 않은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부실공사이며, 현재 개방협약이 끝났고 한 차례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였고, 현재는 협약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3개월만에 다시 균열 및 파손이 되는 상태는 정상적 하자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니 민원인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 향후 다른 건물의 주차장 개방공사 시행 시 위와 같이 파손이 잘되는 MMA같은 재질의 포장재의 사용을 금하여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
방문 답변		현재 협약도 종료되었고 해줄 수 있는 부분 없다고 안내. 3면 재개방 언급하면서 수리 요구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냄
서울 시 유선		▷ 서울시에 유선확인, 3면을 다시 개방하더라도 최초개방이 아니므로 면당 000만원의 시설유지비 지원 불가, 3면 개방은 재개방 시설유지비 조건에도 해당 안 되어 지원 불가함을 확인
4차 서면	23. 1. 26.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광진구의 바닥 부실공사 조치 요청 ○ 민원경위 -2020.2.27. 민원인의 부설주차장 5면 개방을 조건으로 광진구와 민원인이 계약함 -광진구가 주차장 바닥공사를 하고 3개월 후 바닥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제대로 된 답변이 없음

구분	일 시	내 용
		-우편물로 민원을 넣자 교통지도과 담당자와 팀장, 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였고 동년 7월까지 하자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하자가 예상되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공사를 반복하여 업체 대표와 마찰이 생겼으나 광진구 직원들의 품위를 위해 참고 결과를 지켜봄 -결국 보수 수 3개월 후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2022.12.12. 교통지도과 팀장이 현장방문하여 3면 개방 조건으로 주차장 보수에 동의함 -2022.12.30.경 도로 맨홀 침하로 2023.1월 초 도로과 및 치수과에 현장확인 요청하니 기존 아스팔트에 MMA가 덮이면서 겨울철에 얼면서 들뜬 것이라고 함 -2023.1.18. 교통지도과의 새로운 팀장은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하며 전 팀장은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민원요지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요청 -본 민원내용 검토 후 결과 통보 요청
4차 서면 답변	23. 1. 31.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2023. 1. 26. 우리 구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광진구의 바닥 부실공사 조치 요청’ 서면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 주신 2020. 3월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바닥공사 하자보수공사 요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주택의 경우 우리 구와의 협약이 2021. 6. 30. 종료되어 현재는 개방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더이상 시설공사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방안 도출하기 위하여 2022. 12. 12. 방문·협의한 대로 3면 재개방에 대하여 서울시에 지원 기준을 문의하였으나, 최초개방 이후 개방을 중단한 주차장이 재개방할 경우에는 신규개방이 아닌 연장개방에 해당되어 최초개방에 따르는 시설공사지원을 중복하여 시행할 수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문의하신 주차장 포장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개방 시설지원공사 시행 시 공인기관의 품질 인증을 거쳐 널리 쓰이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과 유사한 불편민원은 다른 개방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구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담당자 000 450-000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23. 2. 3. 담당자님 현장 방문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광진구의 바닥 부실공사 조치 요청 ○ 부설하자 공사를 주장하며, 3면 재개방을 조건으로 유지보수해주시기로 한팀장님과 12월에 동의했다면서 다른 재질로 재시공 요구 ○ 담당자와 팀장님이 현장 방문하여 현장 확인함. ○ 서울시와 통화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안내받은 내용 다르다고 주장 -서울시에 확인해보니 23년 지원기준 확대돼서 3면 연장 시에도 유지 보수 지원할 수 있다고 다음주나 다다음주 공문 줄 예정이라고 확인 ⇒ 민원인에게 공문오면 지원기준 재안내 드리겠다고 유선으로 안내했으나 다 잊어버렸다고 협박함 과장님 전화 요구 ○ 당시 업체는 민원 해결 의사가 있으나 민원인은 그 업체하고는 절대로 통화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함

구분	일 시	내 용
유선 민원	23. 2. 6.	○ 소송을 위해 확인하겠다고, 협약 종료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종료된게 아니라고 주장 ⇒ 인수인계 받기로 당시 민원인이 협약종료 의사를 서면민원으로 통보하여서 21. 6. 30. 종료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안내함. 협약 종료시 별도의 서면 통보는 하지 않음. 협약서 3조 2항에 따라 한 쪽의 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하에 협약기간 조정 가능하며,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는 조항 없음 본인이 먼저 협약 종료 의사를 밝혀놓고는 이제 와서 협약 종료를 직권으로 했다고 주장함 본인은 종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인지했다고 주장하나 21년 6월 30일 이후로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하지 않아 운영수익금 지급하지 않았음 ○ 서면답변한 재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공사업체와 공사 담당자에게 확인했고 관련 민원 없다고 답변을 받아 안내한 거라고 질문에 답해줌 ○ 서울시 지원기준이 오면 다시 안내하기로 함
업체 원인 규명 요청		○ 감사담당관 000팀장님 교통지도과 방문하여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업체에 원인규명 요청 조언 ⇒ 문제 재발 업체에 원인규명 요청
변호 사 상담		○ 2차 서면 답변, 3차 서면 답변을 통해 협약 종료 수용을 우리가 답변에 작성하였으므로, 협약 종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기로 함) ○ 관련민원 처리 경위를 검토한 결과로는 우리가 더 이상의 지원을 할 근거는 보이지 않으며, 중단 종료로 연장 협약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서울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하심.(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기로 함) ⇒ 서울시 담당자(000주임님) 유선 확인 시 중단 후 재개방도 연장으로 지원 가능함을 확인
5차 서면 민원	23.2.7.	□ 민원인 소유 주차장 보수공사 책임 회피 및 직원 횡포 시정 ○ 민원인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구청과 협약을 했으나 부설주차장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2021.6.30. 협약종료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함(→교통지도과) ○ 열린민원팀 직원의 횡포에 대한 서면 회신을 원함(→감사담당관)
5차 서면 답변	23.2.13.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2023. 2. 7. 우리 구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교통지도과-2017호(2023. 1. 31.) 서면회신’에 대하여 제기하신 서면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우리 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협조하여 시설지원공사를 지원받으셨으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구와의 협약이 종료되어 현재는 개방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더 이상 시설공사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 2023. 2. 6. 유선상으로 안내드린대로 서울시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기준이 2023년 확대 시행될 예정이오니,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는 대로 2023년 지원기준을 귀하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담당자 000 ☎450-000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일 시	내 용
서울시 지원 기준 문자 안내	23.2.13.	
유선 민원	23.2.15.	5차 서면 답변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소송하겠다고 하고 전화 종료 열린민원실로 이관됨
면담 요청	23.2.21.	열린민원실에 구청장 면담 요청
업체 원인 규명 답변	23.2.24.	공사 이전 건물의 바닥에 하자가 있었고 최대한 민원인 요구에 모두 응하고 보수하였다는 답변
6차 서면 민원	23.2.27.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부실바닥공사 피해 등 조치 요구 ☒ 부설주차장 부실바닥공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 및 법적 대응 검토 실행 예정임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협약은 2021.6.30.자로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는 개방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추가적인 시설공사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음
- 해당 공사는 공인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행되었으며, 시공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약 종료 이후 추가 지원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함
- 또한 민원인은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0년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개선 공사를 지원받았으며, 이후 바닥 균열 및 파손 등을 사유로 수차레 보수 요청을 제기함
- 광진구는 민원 제기 이후 현장 확인 및 업체를 통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협약은 2021.6.30.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도 하자 발생을 이유로 추가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한편,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7.5. 원고 패소 판결 및 2024.3.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 판단 및 결론

- 본 건 민원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에 따른 공사 하자 및 보수 책임과 관련된 사안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및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분쟁에 대한 판단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동일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재차 조사·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호에 따르면,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은 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제2항제8호에 따라, 이미 재판 등으로 처리된 사항은 읍부즈만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건 민원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안으로서, 추가적인 행정적 조사나 재심의를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건 민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처리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읍부즈만의 조사 대상이 아니며 신청인의 고충민원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